# 특약변경대비표

1. **약관명 : 「 고단위플러스」특약**
2. 변경 시행일 : 2017년 3월 3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개정 내용 : 갱신거래 신설

| 개정 전 | 개정 후 | 비고 |
|---|---|---|
| **제 1 조 ~ 제 12 조 (생략)**<br><br>**제 13 조 (신설)** | **제 1 조 ~ 제 12조 (좌동)**<br><br>**제 13 조 갱신**<br>① 손님이 예금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금리확정형에만 적용합니다.<br>② 갱신을 신청한 계좌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계좌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.<br>1. 법적지급제한, 지급 및 해지제한 계좌<br>2. 비과세종합저축을 신청한 계좌로 비과세종합저축한도를 초과한 계좌<br>3. 이 예금이 은행사정에 의해 판매 중단될 경우 판매중단일 이후 만기도래되는 계좌<br>③ 갱신 시에는 갱신 당시 영업점에서 게시한 고시금리를 적용하며, 갱신 당일을 예금의 새로운 신규일로 하나,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합니다. | 조 신설 |